

종합감사

감사보고서

- 2023년 (주)공영홈쇼핑 종합감사 -

2024. 5.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 II. 감사 대상기관 현황 2
 - 1. 일반 현황 2
 - 2. 예산 현황 2

- III. 감사 결과 3
 - 1.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3
 - 2. 협력사의 QA 직원 폭행 등 사건 관련 대응 미흡 16
 - 3. 대표이사 부친상 관련 장례 지원 등 부적정 22
 - 4.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및 모니터링 소홀 31
 - 5. 상임감사 공용차량 운행 및 운행기록부 작성 부적정 35
 - 6. 모텔 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선정 과정 부적정 37
 - 7. 세무조사 대응 관련 임직원 포상 절차 등 부적정 41

- IV. 처분 요약 4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3. 10. 12.과 같은 해 10. 27. 중소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주)공영홈쇼핑(이하 “공영홈쇼핑”이라 한다)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등에 대해 다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공영홈쇼핑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한우 DNA 부적합 상품 판매 의혹, 협력사의 공영홈쇼핑 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에 직원 동원 및 출장비 지원, 상임감사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적 사용, 모델에이전시 선정 입찰 관련 의혹, 세무조사 대응직원 포상 적절성 등 국회 지적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 감사에 앞서 공영홈쇼핑에 대한 기존 감사 결과, 국회 논의 사항 및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심층 분석·점검이 필요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15명의 감사 인원이 2023. 11. 9.부터 12. 1.까지 1단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24. 1. 4.부터 1. 26.까지와 같은 해 3. 6.부터 3. 14.까지 관계자 문답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2024. 4. 24.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기업부 내부 검토를 거쳐 2024. 5. 20.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 대상 기관 현황

1. 일반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매와 홍보를 확대하고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를 선도하기 위해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주) 등이 출자하여 2015. 3. 5. 설립되었으며, 2018. 2. 6.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100% 중소기업 제품으로 방송을 편성하여 전국에 송출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수수료율은 과기정통부 승인조건인 평균 20%를 준수하고 있으며, 초기 창업기업 등의 홈쇼핑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적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공영홈쇼핑의 조직은 3본부 11실 36팀 8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인력은 정원 381명, 현원 37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예산 현황

공영홈쇼핑의 2023년 예산은 총 225,959백만 원이며, 수입은 자체수입 225,872백만 원, 기타수입 87백만 원, 지출은 인건비 27,929백만 원, 경상운영비 2,029백만 원, 사업비 177,997백만 원, 기타 지출 18,004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Ⅲ. 감사 결과

Ⅲ-1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QA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지하는 식품 안전 점검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상품군에 대한 샘플 구매 및 시험성적 의뢰 등의 방법으로 상품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3년 9월 “추석 시즌 식품 안전성 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가운데 (주)☆☆(이하 “☆☆”이라 한다)의 ‘○○ 한우불고기’ 상품에 대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게 되었다.

위 시험 결과 2023. 9. 6. ◎◎는 ‘○○ 한우불고기’에서 유우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QA팀에 메일과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QA팀은 즉시 축산팀과 함께 유우 DNA 검출 결과를 사업본부 A 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A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축산팀은 해당 상품의 방송 판매 중단 조치를 하였다.

이후 공영홈쇼핑은 2023. 10. 18. 대표의 결정에 따라 해당 ‘○○ 한우불고기’ 상품에 대하여 환불 조치하였고, ☆☆의 다른 한우 원료상품 6종 모두를 판매 중지하였으며, 같은 해 10. 19. ☆☆을 사기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으로 고발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공통 사항 >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무한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은 고객과의 약속, 고객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 내부통제 관련 >

공영홈쇼핑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경영 목표 달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내부통제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은 관계 법령 및 내규와 선관의무, 법규 위반 사실 은폐 금지 등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전 관련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이하 “대표”라고 한다)는 「내부통제지침」에 따라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공영홈쇼핑 「직제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 관리(지휘 및 감독)하고, 상임이사는 대표를 보좌하며, 본부에는 본부장을, 실에는 실장을 두어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부장, 실장, 팀장 및 파트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영홈쇼핑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는 대표까지 결재를 득해야 하고, 각 전결권자는 위임전결 사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고, 업무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직속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영홈쇼핑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 협력사 계약 해지 및 자격 제한 관련 >

공영홈쇼핑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점 업체의 상품 품질 관리 의무가 있다. 공영홈쇼핑은 「도·소매사업 취급 규정」에 따라 협력사가 원산지 및 식품 등의 표시 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품목 삭제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업체의 계약 사항 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거나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처벌받은 협력사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불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제35조에 따라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본계약을 해지하거나, 개별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사규의 제정, 개폐의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각 소관부서의 장이 지체없이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직원은 항상 사규의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

< 환불 관련 >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제14조에 따라 협력사는 홈쇼핑에 공급하는 상품에 품질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고, 제조·판매와 관련된 모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협력사는 TV홈쇼핑 등에 노출, 표시된 상품의 원산지 등이 고객의 구매 상품과 일치함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교환 또는 반품하여야 하며, 공영홈쇼핑이 고객에게 직접 상품의 교환, 환불 또는 보상한 경우 공영홈쇼핑은 협력사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거나 구상할 수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유우 DNA 검출 사실 은폐 등 내부통제 부적정

1) 은폐 지시

A 본부장은 2023. 9. 6. ☆☆ ‘○○ 한우불고기’ 유우 DNA 검출 결과를 CCM실 B 실장, QA팀 C 팀장, 상품개발2실 D 실장, 축산팀 E 팀장, 축산팀 F 대리(☆☆ 담당 MD)에게 최초 보고받으면서 ‘추석 시즌에 판매 부진을 우려하여 유우 DNA 검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당부’하였고, ‘대표에게는 추석 이후 본인이 알아서 보고하겠다고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대표 보고 없이 해당 ‘○○ 한우불고기’에 대한 판매 중지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례 1 > 방송 편성반납 사유 허위 보고

방송 판매 상품의 판매 중지는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에 방송 편성반납을 요

청하면, 해당 요청을 근거로 축산팀 등 영업부서에서 편성기획팀에 문서로 요청하여 판매 중지하는데, A 본부장의 판매 중지 지시가 있는 2023. 9. 6. 축산팀 F 대리는 ☆☆으로부터 ‘○○ 한우불고기 상품’의 2023. 9. 7.(목) 10시 25분과 같은 해 9. 15.(금) 20시 40분 등 총 2건의 ‘방송 편성반납의 건’ 제하의 문서를 접수하였다.

위 접수 문서에 따르면 ☆☆은 ‘○○ 한우불고기’ 상품의 방송 반납 사유를 ‘명절로 인한 부자재 입고 지연’으로 기재하여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문서를 접수한 축산팀 F 대리는 방송 반납 사유가 유우 DNA 검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제출한 반납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에 수정·보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 제출한 ‘명절로 인한 부자재 입고 지연’을 방송 반납 사유로 2023. 9. 7. ‘2023년 9월 4일 주차 주간방송 편성반납 요청의 건_○○한우불고기’ 제하의 문서와 ‘2023년 9월 11일주차 주간방송 편성반납 요청의 건_○○한우불고기’ 제하의 문서 등 총 2건의 문서를 기안하여 내부결재로 보고하였다. 이후 검토자 E 팀장은 위 문서의 방송 반납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문서를 결재하였고, 검토자 D 실장과 전결자 A 본부장은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하였다. 그 결과 ‘유우 DNA 검출’이라는 실제 방송 반납 사유와는 다른 ‘명절로 인한 부자재 입고 지연’이라는 방송 반납 사유로 허위로 보고하여 편성기획팀에 판매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례 2 > 식품 안전성 점검 결과 허위 보고

2023. 9. 22. QA팀은 9월 추석 시즌 식품 안전성 점검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체 점검 계획 및 절차(시판 제품 직접 구매 후 공인기관 시험의뢰)에 따라 2023. 9. 6. ‘○○ 한우불고기’ 상품에서 유우 DNA 검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시험의뢰 결과 부적합 개수를 “-”(없음)으로, 공인시험 결과를 “○”(적합)으로 작성하여 부적합 상품에서 제외하고 내부 결재로 보고하였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QA팀 G 대리가 C 팀장에게 DNA 점검 결과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할지를 문의하였고, C 팀장이 ☆☆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 보완되었으니 “○”(적합)으로 처리하되 비고란에 “한우 DNA 공인시험 결과 부적합/보완완료”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 대리의 하급자인 H 주임은 엑셀 양식의 “공인시험 결과” 항목에 “○”(적합), 비고란에 “한우 DNA 공인시험 결과 부적합/보완완료”로 작성하여 QA팀 I 대리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한편, 위 문서를 기안한 I 대리는 ‘○○ 한우불고기’ 상품의 유우 DNA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H 주임이 “공인시험 결과” 항목에 “○”(적합)으로 엑셀 양식 파일을 제출했다는 사유로 기안문에 “-”(해당 없음)으로 작성·보고하였고, 검토자 J 파트장, 검토자 B 실장과 전결자 A 본부장은 DNA 점검 결과 부적합한 ‘○○ 한우불고기’가 “○”(적합)으로 기재된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공영홈쇼핑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2023. 10. 6. 국회에서 ‘2021년~2023년 9월까지 공영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공인시험기관 의뢰한 내역 일체(일시, 상품명, 시험항목, 의뢰 기관, 세부 결과자료 제출)’를 자료요구 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표에게 ‘○○ 한우불고기’에 유우 DNA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보고되었으며, 대표는 이때 최초로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2023. 10. 18. ‘○○ 한우불고기’에 유우 DNA가 검출된 사실이 &&& 뉴스에 보도됨에 따라 공영홈쇼핑 대표는 해당 ‘○○ 한우불고기’에 대해 전액

환불을 결정하였고, ☆☆의 다른 한우 원료상품 모두(6종)를 판매 중지하였으며, 같은 해 10. 19. ‘○○ 한우불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고소(발)장을 서울마포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그간 A 본부장의 은폐 지시로 정상 처리되지 못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은폐 지시 등으로 인해 ☆☆은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을 즉시 교환·반품해야 함에도 유우 DNA 검출 사실이 최초 확인된 2023. 9. 6.부터 공영홈쇼핑 대표의 환불 결정이 취해진 같은 해 10. 18.까지 약 13,112명(주문 수량 약 13,233건)에 대하여 교환 또는 반품 조치를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은 다른 한우 상품들에 대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어 1,286,782,608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협력사 계약 해지 및 자격 제한 검토 미흡

2023. 9. 6. ‘○○ 한우불고기’에서 유우 DNA가 검출되고, 같은 해 10. 19. ☆☆을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으로 고발할 때까지 「직제규정시행요령」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상품의 계약, 발주, 정산, 실적관리 등 상품별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D 실장, E 팀장, F 대리 등은 「도·소매사업 취급 규정」과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상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규정상 위반 여부 및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영홈쇼핑은 2023. 9. 14.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거래 관계 또는 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처벌받은 협력사의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E 팀장과 F 대리는 2023. 11. 23. ☆☆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

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E 팀장은 위 규정을 A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A 본부장과 D 실장의 검토를 받아 주도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력사 자격 제한 관련 조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E 팀장 및 F 대리는 ☆☆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서도 「도·소매사업 취급 규정」 제18조 및 제19조와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제35조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 ‘○○ 한우불고기’ 부적합 상품 환불 부실

공영홈쇼핑은 상품의 변질 등 품질 사고 발생 시에 축산팀 등 해당 영업부서에서 환불 대상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고객만족팀에 요청하면, 고객만족팀은 해당 상품에 대한 환불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 환불을 실행하고, 발생 비용을 경영기획팀에서 취합하여 협력사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확정 후 협력사 매출에서 환불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상계) 처리하고 있다.

2023. 10. 19. ☆☆은 공영홈쇼핑에 ‘원재료 상품이슈로 인한 환불’을 사유로 ‘2023. 8. 29.부터 2023. 9. 6. 출고된 ○○ 한우불고기 상품에 대하여 환불처리 및 추가처리비용에 대하여 협조하겠다’고 문서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축산팀은 위의 협력사 공문을 첨부하여 고객만족팀에 ‘○○ 한우불고기’에 대한 고객 환불을 요청하였고, 고객만족팀은 2023. 10. 19. 환불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의 결재를 받아 2023. 10. 18.부터 같은 해 10. 25.까지(8일간) 환불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에 환불하는 상품 대금에는 방송 판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의 매출에서 상계 처리해야 함에도 축산팀은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 처리를 경영기획팀에 요청하지 않아 121,092,619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계요구 양정】

1) A 본부장

추석 판매 부진을 우려하여 유우 DNA 검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소관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나 소관 업무 관련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A 본부장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따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임직원의 기본윤리, 「정관」 제34조에 따른 이사의 직무, 「임원인사규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 「내부통제지침」 제10조에 따른 선관의무 및 제15조에 따른 임직원의 자율준수 등, 「위임전결규정」 제4조에 따른 전결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전결사항의 보고 등 조항에 위배 된 것으로 이는 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문책 사유에 해당하나, 2024. 1. 7. 위 사람이 퇴직함에 따라 재취업 및 포상 등 제한을 위해 위 비위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할 필요가 있다.

2) D 실장

소관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나, 소관 업무 관련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였고, 사규의 제정 등의 내용은 공표된 날부터 지체없이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

으며, 상품의 계약, 발주, 정산, 실적관리 등 상품별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상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기회를 제공한 D 실장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따른 임직원의 기본윤리, 「내부통제지침」 제10조에 따른 선관의무 및 제15조에 따른 임직원의 자율준수 등, 「사규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주지의무 등,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협력사 등과의 관계 등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공영홈쇼핑 「상벌요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B 실장

소관 업무에 관한 내부 통제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나, 소관 업무 관련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B 실장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따른 임직원의 기본윤리, 「내부통제지침」 제10조에 따른 선관의무 및 제15조에 따른 임직원의 자율 준수 등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공영홈쇼핑 「상벌요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E 팀장

소관 업무에 관한 내부 통제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나, 소관 업무 관련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문서를 결재하였고,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을 주도적으로 개정하였음에도 ☆☆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사규의 제정 등의 내용은 공표된 날부터 지체 없이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상품의 계약, 발주, 정산, 실적관리 등 상품별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표준거래기본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2023. 9. 6. ‘○○ 한우불고기’에서 유우 DNA가 검출되고, 같은 해 10. 19. ☆☆을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으로 고발할 때까지 규정상 위반 여부 및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 인천광역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관계 법령에 저촉된 것이 명확해졌음에도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제35조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기회를 제공한 E 팀장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따른 임직원의 기본윤리, 「내부통제지침」 제10조에 따른 선관의무 및 제15조에 따른 임직원의 자율준수 등, 「사규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주지의무 등,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협력사 등과의 관계 등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공영홈쇼핑 「상별요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C 팀장

소관 업무에 관한 내부 통제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나, 소관 업무 관련 문서 내용에 ‘부적합’ 상품을 ‘적합’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였고,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결재한 C 팀장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따른 임직원의 기본윤리, 「내부통제지침」 제10조에 따른 선관의무 및 제15조에 따른 임직원의 자율 준수 등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공영홈쇼핑 「상별요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6) F 대리

☆☆ 담당 MD로서 ☆☆의 ‘○○ 한우불고기’ 상품 방송 반납 사유가 유우 DNA 검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명절로 인한 부자재 입고 지

연'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하였고, 업무수행 전 소관 업무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 개정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이번 감사 중에 인지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상품의 계약, 발주, 정산, 실적관리 등 상품별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상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2023. 9. 6. '○○ 한우불고기'에서 유우 DNA가 검출되고, 같은 해 10. 19. ☆☆을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으로 고발할 때까지 규정상 위반 여부 및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 인천광역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관계 법령에 저촉된 것이 명확해졌음에도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제35조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기회를 제공한 F 대리인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윤리강령」에 따른 임직원의 기본윤리, 「내부통제지침」 제10조에 따른 선관의무 및 제15조에 따른 임직원의 자율준수 등, 「사규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주지의무 등,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협력사 등과의 관계 등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공영홈쇼핑 「상벌요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① 추석 판매 부진을 우려하여 유우 DNA 검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를 대표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등 소관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A 본부장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윤리강령」, 「정관」 제34조, 「임원인사규정」 제4조, 「내부통제지침」 제10조 및 제15조, 「위임전결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A 본부장이 2024. 1. 7. 퇴사함에 따라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통보(인사자료)]

② 부당한 업무지시와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방임한 A 본부장 등 8명을 공영홈쇼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통보)

③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보고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협력사 자격 제한 검토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부서장·담당자 등 관련자에 대해 징계·경고·주의 조치하며,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개인경고 1명, 개인주의 1명)

④ 관계 법령 및 공영홈쇼핑 규정 등에 위배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및 자격 제한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기관통보)

⑤ 환불 미공제 금액 (방송 판매 수수료 매출)은 회수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요구)

1. 업무 개요

2022. 7. 11. 공영홈쇼핑 QA팀 L 과장은 신규상품(◇◇의 한우갈비찜)에 대한 위생점검을 목적으로 ☆☆에 방문하였다가 협력사 대표(M)에게 폭행 및 모욕을 당하였고, 이후 L 과장은 2022. 7. 12. 업무지원팀에 법률지원을 요청하였고,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위 사건을 L 과장으로부터 신고 접수하고 2022. 7. 13. 부터 같은 해 7. 27.까지 공영홈쇼핑 담당자·부서장과 ☆☆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공통 사항 >

공영홈쇼핑 「내부통제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내규와 선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전 관련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영홈쇼핑 「사규관리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항상 사규의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영홈쇼핑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각 전결권자는 위임전결 사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QA 업무처리 관련 >

공영홈쇼핑의 판매를 위한 신규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전품질관리지침」

에 따르면 판매 중 제조원이 변경된 상품을 포함하여 신규상품의 품질 승인 이전의 점검 단계를 “사전 QA”라고 지칭하며, 사전품질 승인에 대한 최종권한은 품질보증 부서장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영홈쇼핑 「QA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위생점검은 식품의 생산 현장 점검(본 제품 생산 전 생산공장 환경점검)으로 서류, 작업장 입구, 작업장 내부, 작업장 외부, 작업자, 제품, 설비, 회수프로그램의 8가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 보완, 불합격 세 가지로 판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공영홈쇼핑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복무요령」에 따르면 직원이 보직 변경, 전보, 퇴직, 휴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요령 [별지 4] 업무인수 인계서에 따라 그 담당 업무 내용 및 보관문서, 물품증명서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나 자기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QA 업무방해 관련 >

공영홈쇼핑과 협력사 간 상품거래에서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협력사가 공영홈쇼핑 임직원 등이 품질관리 상태 등 확인 및 검수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미협조하는 경우는 표준거래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법률지원 및 자체 감사 관련 >

공영홈쇼핑 「임직원 법률지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적극적·능동적 업무수행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업무수행 중에 고객 또는 협력사의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은 법률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이 이뤄지면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지원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영홈쇼핑 「감사규정」 제34조에 따르면 감사는 처분 요구사항과 조

치 결과 내용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QA 업무처리 부적정

「사전품질관리지침」에 따라 신규상품은 서류·샘플 점검, 위생점검(현장 실사)을 실시하고, 모든 점검 결과가 합격이면 QA팀 팀장의 ‘사전 QA 승인’을 받아 방송 편성된다.

그러나 QA팀 G 대리는 ☆☆의 신규상품(◇◇의 한우갈비찜)에 대하여 2022. 7. 11. L 과장 폭행·모욕 사건으로 현장실사를 종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영업시스템에 2022. 5. 15. 샘플점검, 2022. 7. 26. 사전 QA 승인, 2022. 8. 29. 배송 점검, 2022. 9. 1. 위생점검(현장 실사 미실시, 85점 부여) 등 관련 업무처리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규 상품의 경우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QA팀은 기존 협력사의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그간 관행적으로 QA 직원이 현장 실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고, 위생점검을 생략(미실시)한 채 등록·처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L 과장은 위생점검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 보완 또는 부적합 등으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데도 폭행 등 사건을 이유로 위생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후임자인 G 대리에게 본인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2. 7. 11. QA팀은 “(가공축산) 당사 주요 제조사 대표 상품 암행점검 실시(안)”에 따라 고객민원 등에 따라 상품 샘플을 직접 구매하여 점검하는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CCM실장에게 내부 결재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QA 업무방해에 따른 계약 해지 검토 노력

2022. 7. 11. QA팀 L 과장은 협력사 ☆☆에 신상품(◇◇의 한우갈비찜) 위생점검을 위해 방문하여 당시 고객 이슈가 있던 갈비탕 민원(방송샘플과 고객 배송상품 간 상이 등 품질 불만 사항)에 대해 얘기하다가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대해 2022. 7. 22. 법률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2022. 8. 2. 대표 보고 사항에 따르면 ‘정당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였고, CCM실 B 실장, QA팀 C 팀장, K 편성기획팀 차장(前 축산팀장) 등 실무자 다수가 민원 내용이 품질 불만 사항이라면 QA 업무이기 때문에 공적 업무 범위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정당한 현장 위생점검 중에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상품의 계약 등 상품별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팀이나 QA 업무방해 피해 당사자인 QA팀 등 어느 부서에서도 「표준거래기본계약서」 제9조에 따른 규정 위반 여부 및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해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조치 미흡

공영홈쇼핑 업무지원팀(현(現) 법무팀)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폭행 피해자인 L 과장에 대하여 2022. 7. 22. 법률지원심의위원회에서 즉시 지원을 심의·의결하였고, 2022. 8. 2.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공영홈쇼핑은 「임직원 법률지원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이 이뤄지면 법률지원 신청인 및 신청인 소속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법률자문, 법률상담 등 자문 지원을 수행한다.

그러나 L 과장이 심의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현재 진행 중 형사사건의 조사 및 형사 합의 등에 대한 즉시 지원을 결정하고도, 2022. 11. 11. L 과장

이 ☆☆과 합의할 때까지 법률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자체감사 조치결과 이행관리 소홀

공영홈쇼핑 「감사규정」 제34조(조치결과의 확인)에 따르면, 감사는 차기 감사 등을 통해 처분요구 사항과 조치결과 내용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QA직원 폭행 건에 대한 자체감사 후속조치로 ☆☆ 대표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 및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과 □□은 폭행 당사자인 협력사 대표(M)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감사처분에 대한 답변 공문 하단에 대표가 자필로 기명·서명을 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 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원활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회신하였는데도 공영홈쇼핑은 사과 등 보완요구 없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요구 양정】

1) B 실장

위임전결 사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B 실장의 행위는 「내부통제지침」 제10조에 따른 선관의무 및 제15조에 따른 임직원의 자율 준수, 「위임전결규정」 제5조 권한과 책임 등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공영홈쇼핑 「상벌요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C 팀장

사전QA 승인권자로서 ☆☆의 신규상품(◇◇의 한우갈비찜)이 2022. 9. 1. 영

업시스템에 위생점검 등록처리 되었는데, 그보다 앞서 2022. 7. 26. 사전QA 승인 하였고, 위임전결 사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C 팀장의 행위는 「내부통제지침」 제10조에 따른 선관의무 및 제15조에 따른 임직원의 자율 준수, 「위임전결규정」 제5조 권한과 책임 등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공영홈쇼핑 「상별요령」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① 공영홈쇼핑의 정당한 품질점검 행위를 방해한 ☆☆과의 계약 해지 등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통보)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공영홈쇼핑 직원의 업무 권한을 침해하는 협력사에 대한 계약 해지 검토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부서장·담당자를 징계·경고·주의 조치하며, (중징계 1명·경징계 1명, 개인경고 1명, 개인주의 2명)

② 법률지원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및 자체감사 결과 이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은 2016. 4. 28.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을 제정하여, 위 기준이 폐지된 2023. 8. 31.까지 임직원에 대한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표이사 부친상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임직원 45명은 2023. 5. 25.부터 5. 27. 사이에 조문 및 장례지원 등을 목적으로 대구 소재 장례식장(이하 “빈소”라 한다.)에 다녀온 뒤 이 중 40명이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신청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출장비 등 수당 및 임직원 근태 처리 관련 >

공영홈쇼핑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이하 “장례지원기준”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장례지원 관련 주무부서장은 장례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업무지원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유사시 장례지원팀을 3인 이내로 구성하여 최대 3일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장례지원기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주무부서장은 장례지원팀 구성원에게 장례지원기간 및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출장비(이동여비, 일식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장례지원팀 외 임원, 소속 본부장, 실장, 팀장(파트장) 인사팀장(이하 “관리자급 임직원”이라 한다)이 조문 시에는 소요된 이동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영홈쇼핑 「복무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

부터 18시까지(1일 8시간)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여비기준」 제1조 등에 따르면 출장비 등 여비는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크게 운임(철도운임, 자동차운임 등)과 체재비(숙박비, 일식비) 등으로 구분된다.

< 상급자의 부당 지시 등 관련 >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강령 제21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원 직무청렴계약 미이행 등 관련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임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하 “청렴계약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되, 운영 규정에는 계약 체결의 방법 및 절차, 청렴의무의 내용 및 위반 시의 제재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임원은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대표이사 부친상 관련 출장비 등 수당 집행 부적정

공영홈쇼핑은 임직원 장례 상황 발생 시 장례지원기준에 따라 장례지원팀에게는 출장비를, 관리자급 임직원에게는 조문 시 이동여비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 임직원에게는 출장비 등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출장비를 신청한 40명의 임직원 중 장례지원팀 4명과 관리자급 임직원 15명에게는 정당하게 출장비를 지급한 반면,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장례지원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게 출장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21명 중 기획조정1파트 N 파트장(이하 “N 파트장”이라 한다) 및 같은 부서 O 대리(이하 “O 대리”라고 한다)는 국회를 대응한다는 이유로 빈소에 방문하여 근조화환 정리, 조문객 동선 안내, 운구 등 장례를 지원하고 출장비로 477,985원을, 사회문화팀 P 대리(이하 “P 대리”라고 한다)는 언론사를 대응한다는 이유로 빈소에 방문하여 언론사가 보내온 조의금 전달 및 근조화환 리스트를 작성하고 출장비로 119,800원을 신청·수령하는가 하면, 마케팅 실 Q 실장 등 관리자급 임직원 18명은 조문을 목적으로 빈소에 방문하고 일식비·숙박비로 1,155,000원을 신청·수령하는 등 계 1,752,785원의 출장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또한, N 파트장 등 7명이 2023. 5. 27.(토) 휴일에 운구 등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 중 5명(휴일근무수당 미신청자 2명 제외)이 휴일근무수당(이하 “휴일수당”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휴일수당 수령자 5명 중 업무지원팀 R 차장 등 2명은 장례지원기준에 따른

장례지원팀 구성원으로 휴일수당을 정당하게 신청·수령한 반면, N 파트장 등 나머지 3명은 공영홈쇼핑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대표이사 부친상에 국회 대응 또는 조문을 이유로 빈소에 방문한 뒤 최장 3일간(장례 기간: 2023.5.25.~5.27.)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빈소에 머무른 기간 중에 휴일(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휴일수당을 신청·수령하는 등 계 552,460원의 휴일수당 및 12시간의 보상 휴가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대표이사 부친상 관련 빈소에 방문한 임직원 45명 중 장례지원기준에 근거 등이 있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이 2023. 5. 25.부터 5. 26. 사이에 정규 업무시간 중 출장을 통해 빈소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감사기간 중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례지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행적 업무처리” 및 “상급자의 부당 지시”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장례지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행적인 근태 처리 등 부적정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임직원 관련 장례 상황이 발생하여 빈소에 방문할 때에는 정규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방문하거나 불가피하게 정규 업무시간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장례지원기준이 제정된 2016. 4. 28.부터 폐지된 2023. 8. 31.까지 임직원 관련 장례 상황이 발생하면 관행적으로 정규 업무시간 중 출장을 통해 빈소에 방문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번에 문제시된 대표이사 부친상 역시 정규 업무시간 중 출장을 통해 빈소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임직원 근태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대표이사 부친상건 제외) 장례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

게 출장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기획팀 S 팀장 등 임직원 20명이 조문 등을 목적으로 빈소에 방문하였는데, 대외협력팀 T 팀장 등 7명은 장례 상황이 발생한 임직원의 부서장 자격으로 빈소에 조문하여 이동여비만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일식비로 245,000원을 신청·수령하는가 하면, 경영관리팀 U 팀장 등 7명은 장례 상황이 발생한 임직원의 소속 부서장이 아닌데도 출장을 통해 조문하고 일식비 또는 이동여비로 311,778원을 신청·수령하는 등 계 556,778원의 출장비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출장업무 및 출장비 정산 관련 상급자의 부당 지시

공영홈쇼핑 V 팀장은 2022. 12. 20.부터 감사일 현재(2024. 1. 9.)까지 사회문화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PR(Public Relations) 홍보 운영, 사회공헌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W 실장은 2021. 12. 1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부처 대응, 국회 업무 및 국정감사 대응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X 실장은 2021. 12. 1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경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운영 관리, 법무 업무계약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사회문화팀 V 팀장(이하 “V 팀장”이라 한다)은 2023. 5. 26. 오전 10시경 같은 부서 P 대리에게 빈소에 방문하여 언론사를 대응(조의금 전달 등)하도록 지시하였고, 기획조정실 W 실장(이하 “W 실장”이라 한다.)은 2023. 5. 25. 오후 3시경 같은 부서 N 파트장과 O 대리에게 빈소에 방문하여 국회를 대응(국회 조문객 응대 등)하도록 지시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영홈쇼핑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대

표이사 부친상에 임직원들을 동원시켜 사실상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빈소에 조문 다녀온 관리자급 임직원의 출장비 정산과 관련해서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사교육팀 Y 과장(이하 “Y 과장”이라 한다)은 2023. 5. 30.경 출장비를 협조 승인하는 과정에서 출장비 일체(이동여비, 일식비, 숙박비)가 지원되는 장례지원팀 인원과 달리 관리자급 임직원의 경우 이동여비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관리자급 임직원 중 이동여비만 청구한 건에 대해 우선 승인 처리하고, 이동여비와 일식비·숙박비를 함께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보류하였다.

이후 Y 과장은 이틀 뒤인 6. 1. 오전 9시경 X 실장에게 “규정상 장례지원을 목적으로 출장 간 장례지원팀 인원과 조문을 목적으로 출장 간 관리자급 임직원 간에 지원되는 출장비에 차이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보고하였다.

그런데도 X 실장은 Y 과장에게 “추후 규정 개정을 통해 출장비 지급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관리자급 임직원들에게도 장례지원팀과 마찬가지로 이동여비 외 일식비·숙박비까지 지급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하급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게 하였다.

라. 장례지원 관련 사적 노무 요구 및 묵인 등 기관장의 부적절한 처신

공영홈쇼핑 Z 대표이사(이하 “Z 대표”라고 한다)는 2021. 9.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영홈쇼핑 기관장으로서 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Z 대표는 장례지원 목적으로 파견된 장례지원팀 구성원 외에 국회 대응, 조문 등을 목적으로 빈소에 방문한 임직원 중 일부가 최장 3일간(장례 기간: 23.5.25.~5.27.) 빈소에 머무르면서 조문객 동선 안내, 근조화환 정리, 음식 서빙, 운구 등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이를 방치·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Z 대표는 “중요한 언론사가 보내온 근조화환을 앞쪽에 배치해야지 왜 뒤쪽에 배치하느냐”고 나무라는 등 사실상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하여 발인일인 2023. 5. 27. 오전에는 장례지원팀 구성원 3명 외에 임직원 4명이 추가로 동원되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원이 운구를 수행하였고, Z 대표는 운구 전날인 2023. 5. 26. 늦은 저녁(20시경)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운구 인원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임직원이 운구에 동원되도록 내버려 두는 등 결과적으로 공영홈쇼핑 대표라는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

그 결과 임직원이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도 “3항 가”와 같은 이유로 출장비 등 수당이 환수되어, 결과적으로 기관장 부친상에 임직원 사비가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3항 가~라”와 같은 이유로 국회·언론 등으로부터 장례지원 및 출장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비 등 논란이 발생하였다.

더불어 이 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원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청렴계약 의무 소홀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혁신지침에 따라 임원에 대한 청렴계약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임원 채용 시 3개월 이내에 위 규정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임원에 대한 직무청렴계약 등과 관련하여 혁신지침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18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소속 임원에 대한 직무청렴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청렴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청렴에 대한 임원의 인식 저하가 야기되었고, 그 결과 “3항 라”와 같은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징계요구 양정】

기관장 부친상 관련 실무자가 출장비를 협조 승인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장례지원팀 인원과 조문 인원 간 출장비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추후 규정 개정을 통해 출장비 지급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실무자로 하여금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출장비를 집행하도록 지시한 X 실장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상벌요령」 제14조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① 기관장 부친상 등 장례지원과 관련하여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된 출장비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시정요구)

② 임직원 상조 상황 발생 시 정규 업무시간 중 빈소에 방문하거나 임원에 대한 청렴계약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며(기관경고)

③ 공영홈쇼핑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기관장 부친상에 방문하도록 지시하여 실무자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한 V 팀장과 W 실장에게 경고를 촉구하고(개인경고)

④ 기관장 부친상 관련 실무자가 규정을 검토하여 “장례지원팀과 조문 인원 간 출장비 지급기준이 다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실무자로 하여금 규정을 위반하여 출장비를 집행하도록 지시한 X 실장에게는 「상벌요령」에 따라 징계처분하며(경징계)

⑤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라 임원에 대한 청렴계약규정 제정 및 직무 청렴계약 체결 등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⑥ 본인의 부친상과 관련하여 빈소에 방문한 임직원에게 사실상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이들이 화환 정리, 음식 서빙 등 장례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이를 방치·묵인하고, 내부 직원이 운구에 동원되도록 내버려 두는 등 사실상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한편,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언론에 비판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영홈쇼핑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2조에 따라 경고합니다.(기관장경고)

1. 업무개요

공영홈쇼핑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접대비)와 조직활성화를 위해 부서의 통상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서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하여 「법인카드 관리지침」 과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전임)감사 AA(이하 ‘AA 감사’라고 한다)는 2021. 3. 29.부터 2023. 11. 16.까지 공영홈쇼핑의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경비 집행에 사용하도록 감사 직위자에게 개별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 및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8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고, 허위출장 및 업무추진비 허위결제 등으로 경비를 조성해서도 아니 되며,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영홈쇼핑 「법인카드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건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1조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8조에 따라 경비 집행에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영홈쇼핑은 「법인카드 예산 관리방안」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법인카드를 재결재하여 실제 사용시간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은 「법인카드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배포하여 동일시간대에 사유 없는 법인카드 분할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분할결제 금지를 1회 위반시에는 사용자 및 해당 팀장, 해당부서에 경고 조치하고 2회 위반시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영홈쇼핑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매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담당부서는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검토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AA 감사는 2022. 1. 27. 오후 4시경 영등포구에 소재한 ‘△△’에서 법인카드 180,000원을 결제하고 ‘부서운영비’로 경비 처리하였으나, 해당일 해당 지역에 출장한 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A 감사는 2023. 6. 30. 오후 2시경 영등포구에 소재한 ‘▽▽’에서 법인카드 240,000원을 결제하고 집행내용을 ‘하반기 경영계획 토론/AA 외 7명’으로 기재하여 ‘부서운영비’로 경비 처리하였으나, 해당일 해당 지역 출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무 시간에 음식점에서 사용한 부서운영비 중 적격증빙이 없는 법인카드 사용 건이 총 20건 1,866,300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AA 감사는 집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서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공영홈쇼핑에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나. 법인카드 분할결제

AA 감사는 2021. 6. 10. 오후 20시 49분경 ‘●●●’에서 부서운영비를 12만원과 10만 4천원으로 분할결제하고, 2021. 10. 7. 오후 1시 36분경 ‘♠♠’에서 12만원과 9만 7천원으로 부서운영비를 분할하여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분할결제 의심 사례가 총 50건, 3,636,200원에 이른다.

더욱이 추석 및 설 명절에 대외 선물을 구매하면서 2021. 12. 31. 내부 임직원 선물 구입비 1,187,010원을 비롯한 총 4건의 선물 구입 건에 대해서는 총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주문시 인당 개별 주문 및 결제하는 방식으로 분할 결제하여 지출결의서에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다. 법인카드 집행 투명성 위배

AA 감사는 2021. 6. 10. 20시 47분경 ‘부진상품 대책 및 신상품 관련 논의’ 후 영등포구 소재 한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비용이 224,000원으로 당시 거리두기 기준인 12만원을 초과하자 이를 바로 취소하고 12만원과 10만 4천원으로 분할결제 하는가 하면, 2021. 11. 17.에는 영등포구 소재 식당에서 21시 19분경 16만원을 결제한 후 21시 21분에 결제 취소하고 12만원과 4만원으로 분할 결제하였으며, 다음날인 2021. 11. 18. 오후 5시경 전날 결제했던 4만원을 다시 결제 취소하고 재결제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및 동일시간대 분할결제를 숨기기 위해 실제 집행내역과는 다르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라. 법인카드 모니터링 점검 제외

한편 공영홈쇼핑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16조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제6조, 제8조에 의거 1차 법인카드 모니터링 부서인 경영기획팀은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 등에 대하여 전표 승인 시 총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사실에서는 법인카드 모니터링 내역을 매 분기 경영기획팀으로부터 전달받아 부적정하게 사용된 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모니터링 실시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과 법인카드 분할결제건, 야간과 휴일 법인카드 사용 건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변상) 및 부서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고, 법인카드로 온라인 구매를 한 경우에는 결제된 물품의 최종 배송지 확인을 위해 지출결의서에 물품 수령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사용 건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간 부적정 사용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제도 취지가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 ① AA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환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상임감사 등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기관주의)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은 「차량관리지침」에 따라 업무용차량을 관리·운행하고 있으며, 「임원복무규정」에 따라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차량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원은 전용차량을 이용하며, 전용차량은 별도의 운전자를 둘 수 있다. 또한, 차량 배차 시 신청자는 운행종료 후 운행기록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운영에 관하여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업무와 관련되는 활동 등 이용목적의 긴급도 및 중요도에 따라 배차한다.

2023. 12. 29. 개정 전 「임원복무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감사)가 근거리 출장을 가는 경우는 출장내용을 기록·관리하지 않아도 되나, 2023. 12. 29. 개정된 「임원복무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 감사의 출장은 전자문서 등을 활용하여 출장목적·장소·시간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임원인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감사규정」에 따르면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추가 감사를 하거나, 징계·문책 등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업무용 차량 목적 외 사용(AA 감사)

AA 감사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15건을 업무와 관련된 활동, 대외 협력 업무 등으로 보기 어려운 건강검진, 병원진료, 문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운행기록부에 근거리 출장 사유 기재 부실(AB 과장)

2022년 중기부는 공영홈쇼핑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감사도 근거리 출장 시 운행기록부의 비고란에 목적지 등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 전용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AB 과장은 2022년 1월부터 감사 취지에 따라 운행기록부의 비고란에 이용 목적을 기재하다가 이후 9개월간(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은 감사의 전용차량 이용 목적이 유사·반복적(업무 협의, 국회 방문 등)이라는 사유로 비고란에 이용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3년 9월부터는 국회 등에서 지적함에 따라 다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 ① 전(前) 상임감사(AA)의 전용 차량 목적 외 사용 내역을 통보하오니, 부당 사용금액(왕복 유류비 등)만큼 회수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통보)
- ② 운행기록부에 감사의 근거리 출장 사유를 부실하게 기재한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AB 과장

1. 업무 개요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이하 “공영홈쇼핑”이라 한다.)은 방송품질 제고 및 원활한 방송 판매 진행을 위해 전문 모델 에이전시를 통하여 모델을 수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모델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선정 절차는 ①내부품의 ②입찰공고 ③ 규격심사 ④개찰 ⑤계약체결 ⑥과업수행의 절차로 진행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절차 등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영홈쇼핑 「계약사무 처리기준」 제2조(적용범위) ②항에 의거 자체 기준을 따라야 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영홈쇼핑 「계약사무 처리기준」 제36조에 따르면 제3장 ‘계약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입찰서의 제출·접수에 관한 사항

공영홈쇼핑 입찰공고문(공영홈쇼핑 모델에이전시 사업자 선정, 2021.10.12.)의 15. 기타 참고사항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④항에 따르면,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②항에 의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영홈쇼핑 “모델에이전시 사업자 선정” 과업지시서 규격평가 기준표 내 보유모델 현황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카테고리별로 패션(잡화/ 보석 포함), 일반, 학생, 영유아는 20명 이상이고, 시니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입찰서 접수기한 마감 이후 추가 제출서류 접수

「공영홈쇼핑 2021년 모델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에 의하면, 규격입찰서는 접수 시간(2021.10.20.(수) 09:00~11:00)에 ‘모든 참여업체의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일괄접수하며(제출시간 이전, 이후에는 제안서 접수 불가) 규격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 9페이지에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영홈쇼핑 방송기획팀 AC 과장(이하 “AC 과장”이라 한다)은 3개 업체의 규격입찰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주)♣♣’의 규격입찰서는 접수 시간 이내인 10시 41분에 접수하였으나, ‘◆◆’와 ‘●●’의 실적증명서, 프로필 등을 보완한다는 사유로 각각 11시 19분, 13시 58분에 규격입찰서를 접수하고,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규격평가를 진행하였다.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AC 과장은 규격입찰서를 제출 받은 후 명확한 규정의 근거 없이 경미한 사항의 보완이라고 판단하여 미비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그러나 ◆◆ 등이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한 실적증명원, 보유모델 현황 등 서류는 각각 배점이 20점으로 규격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인 경우 다음 단계인 가격 개찰을 통해 업체가 최종 선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행위가 경미한 사항의 보완으로 보기에 어렵다.

나. 규격(제안서)평가 부적절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의 ‘제안서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규격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합계점수가 85점 이상의 적격인 업체만 개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규격평가 지표 항목 중 “보유모델 현황(20점 배점)”에 대한 평가 기준은 “카테고리별로 패션(잡화/ 보석 포함), 일반, 학생, 영유아는 20명 이상, 시니어는 10명 이상” 확보로 되어 있고, 실제 평가는 공급모델출연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와 증빙서류(모델 프로필 등)를 토대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AC 과장은 모델에 대한 카테고리별(패션, 일반, 학생, 영유아, 시니어 등) 명확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평가자인 방송제작 1팀 AD 과장(이하 “AD 과장”이라 한다)은 학생·영유아 카테고리 모델 수를 중복하

여 산정하는 등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AD 과장은 ‘실적증명원’이 접수 기한 마감 이후에 제출되어 점수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나 이를 인정하였고, ‘보유모델 현황’의 경우 카테고리별 20명 이상, 시니어 10명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제안서(92명)와 확약서(150명)의 모델 수가 일치하지 않아 확약서의 숫자를 신뢰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규격평가 점수 미달로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업체가 선정되어 가격 개찰을 하도록 하여 최종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규격평가 항목의 모델 카테고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고 접수 시간 이후에도 입찰 참가 업체에게 임의로 미비한 제출 서류를 보완하게 하는 등 모델 공급 에이전시 계약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AC 과장의 행위는 「상벌요령」 제14조제10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① 접수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의로 미비 서류를 보완하게 하고, 규격 평가 항목에 대하여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 등 모델 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실시한 담당자에게 “징계 요구”하시기 바라며, (경징계) AC 과장

② 모델 인원 수가 확약서, 제안서, 프로필 등에 서로 상이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규격평가 업무를 부적절하게 실시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AD 과장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이하 ‘공영홈쇼핑’이라 한다)은 「인사관리규정」 및 「상별요령」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2023. 2. 9. “세무조사(조사 기간: '22.12.8.~'23.2.1) 우수 대응 직원에 대한 포상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직장 질서 유지 및 업무 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포상을 행할 수 있고,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결정하며, 포상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별요령」에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상별요령」 제13조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하여 별도(수시)의 포상을 진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절차 및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등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상훈, 포상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이 소속 부서장 등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규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규는 규정, 요령, 기준, 지침 순위에 따라 상위규정이 하위규정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공영홈쇼핑은 이건 포상 관련 경영기획팀 AE 팀장 등 8명에게 기관장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에게 총 8,500,000원(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경영기획팀(세무조사 대응부서)에는 부서운영비로 1,00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9,500,000원의 포상금을 부상으로 지급하였다.

위 포상 경과를 살펴보면, 공영홈쇼핑은 2023. 1. 30. 임원회의에서 세무조사 대응 직원에 대한 포상 논의가 있는 직후 경영지원실장은 인사교육팀장에게 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에 인사교육팀장은 같은 날 경영기획팀장에게 공적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인사교육팀은 2023. 2. 1. 경영기획팀으로부터 공적조서를 제출받아, 2. 7. “정기 세무조사 우수 대응 직원 공로 포상(안)”을 작성한 다음 이틀 뒤인 2. 9. 인사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가. 세무조사 대응 포상 관련 절차 누락 등 부적정

공영홈쇼핑 「상별요령」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 포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영홈쇼핑은 이 건과 같이 수시 포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은 이건 포상 관련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만으로 수시 포상을 추진함과 아울러 포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최근 5년 평균 433,521원 대비 약 2배 많은 1,062,500원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포상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이건 포상과 관련하여 언론 등으로부터 포상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 등 논란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포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인사위원회 제척 관련 규정 간 충돌 부적정

공영홈쇼핑 「사규관리규정」에 따르면 사규는 규정, 요령, 기준, 지침 순위로 상위규정이 하위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규정과 하위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한편 이를 개정하여 충돌 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의 포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상위규정인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원에 대한 포상 심의 시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서장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을 제척·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규정인 「상별요령」에서는 직원에 대한 포상 심의 시 제척·회피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별요령」이 상위규정인 「인사관리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포상 심의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경영지원실장)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위 포상을 심의하는 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 심의가 이루어졌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① 앞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세부기준 등 없이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기관주의)

② 심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이 포상을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상별요령」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IV. 처분 요약

1. 처분요구사항(총괄)

□ 중징계 2건, 경징계 5건, 주의·경고 8건(개인 5, 기관 3), 시정요구 1건, 개선 요구 1건, 통보 5건

구분	건명	관계기관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기관	개인		
1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 통제 부적정	(주)공영홈쇼핑	통보(2) 시정요구	중징계(2), 경징계(3), 경고(1), 주의(1)	'24. 6월 (징계), '24. 7월	
2	협력사의 QA 직원 폭행 사건 관련 대응 미흡	(주)공영홈쇼핑	통보 주의	중징계(1), 경징계(1) 경고(1) 주의(1)	'24. 6월 (징계), '24. 7월	
3	대표이사 부친상 관련 장례 지원 등 부적정	(주)공영홈쇼핑	경고 시정요구 통보	경징계(1) 경고(3)	'24. 6월 (징계), '24. 7월	
4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및 모니터링 소홀	(주)공영홈쇼핑	주의 통보	-	'24. 7월	
5	상임감사 공용차량 운행 및 운행기록부 작성 부적정	(주)공영홈쇼핑	통보	주의(1)	'24. 7월	
6	모델 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선정 과정 부적정	(주)공영홈쇼핑	-	경징계(1) 주의(1)	'24. 6월 (징계), '24. 7월	
7	세무조사 대응 관련 임직원 포상 절차 등 부적정	(주)공영홈쇼핑	주의 개선요구	-	'24. 7월	

* 2번 중징계(1), 경징계(1)는 1번과 통합하여 징계처분

2. 개인 처분 명세

□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 경고 5명, 주의 5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지적 내용
				주의	경고	징계	
1	(주)공영홈쇼핑					○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2	(주)공영홈쇼핑					○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협력사의 QA 직원 폭행 사건 관련 대응 미흡
3	(주)공영홈쇼핑					○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협력사의 QA 직원 폭행 사건 관련 대응 미흡
4	(주)공영홈쇼핑					○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협력사의 QA 직원 폭행 사건 관련 대응 미흡
5	(주)공영홈쇼핑					○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6	(주)공영홈쇼핑				○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7	(주)공영홈쇼핑			○			유우 DNA 검출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8	(주)공영홈쇼핑				○		협력사의 QA 직원 폭행 사건 관련 대응 미흡
9	(주)공영홈쇼핑			○			협력사의 QA 직원 폭행 사건 관련 대응 미흡
10	(주)공영홈쇼핑			○			협력사의 QA 직원 폭행 사건 관련 대응 미흡
11	(주)공영홈쇼핑					○	대표이사 부친상 관련 장례지원 등 부적정
12	(주)공영홈쇼핑				○		대표이사 부친상 관련 장례지원 등 부적정
13	(주)공영홈쇼핑				○		대표이사 부친상 관련 장례지원 등 부적정
14	(주)공영홈쇼핑				○		대표이사 부친상 관련 장례지원 등 부적정
15	(주)공영홈쇼핑					○	모델 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선정 과정 부적정
16	(주)공영홈쇼핑			○			모델 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선정 과정 부적정
17	(주)공영홈쇼핑			○			상임감사 차량운행 및 운행기록부 작성 부적정